

## DDA협상, 서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

### DDA협상이 출범하기까지
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다자간무역협상은 GATT(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)체제 하에서 총 8차례 출범
  - 이들 다자간무역협상은 'Round'로 통칭되는데 이를 통해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무역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
  - 특히 8번째 Round인 UR(Uruguay Round)협상은 1986년부터 1993년까지 7년에 걸쳐 진행된 결과 1995년 WTO(World Trade Organization)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킴
  - 이전까지의 GATT체제는 주로 공산품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촉진시켰지만, UR협상 결과 WTO체제 하에서는 농산물과 서비스 등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의 시장이 개방됨
- 더 많은 시장개방과 새로운 무역규범의 필요, 그리고 DDA(Doha Development Agenda)협상의 출범
  - UR협상이 타결되었지만 WTO 회원국들은 시장개방이 미흡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추가 자유화 협상을 2000년부터 재개하기로 함
  - 공산품분야에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, 세계화 진전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무역규범의 필요성 제기
  - 이에 따라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간 충분히 광범위한(sufficiently broad-based)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
  - 그 결과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의 제4차 각료회의를 통해 9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인 DDA협상을 출범시키고, 2002년 초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종료하기로 함

### DDA협상의 특성과 주요 협상의제

○ DDA협상의 특성

-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원칙을 강화. 또 전 협상분야에 대한 일괄타결방식(single undertaking)을 채택하여 일부 협상안에 대한 선별적 수용을 배제하고 협상에서의 'Give and Take'를 가능하게 함
-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처하고자 기존 UR협정의 규범 관련 의제를 개정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분야의 규범 관련 의제 추가
- 협상의제와 병행하여 개도국 경제개발에도 초점이 주어짐

○ 시장개방 관련 의제, 규범 관련 의제, 기타 의제 등이 주요 협상의제

[표] DDA협상의 주요 의제

주요 의제 부문	주요 협상 분야
시장개방 관련	· 농업, 서비스, 비농산물(공산품, 임수산물)
규범 관련	· 기존 협정 개정: 반덤핑, 보조금·수산보조금, 지역협정, 분쟁해결 · 신규범 제정: 투자, 경쟁정책, 무역원활화, 정부조달투명성
기타 부문	· 환경, 지적재산권 ·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'무역을 통한 경제개발'을 특별 지원

### DDA협상 진행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응 기초

- 농산물, 임수산물 등 협상에서 우리경제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부문들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
-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과 수입국들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존재.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'비교역적 관심'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른 수입국들과 공조 중임

- 이미 관세율을 비교적 충분히 낮추어 시장을 개방한 공산품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의 시장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
  - 우리나라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평균 6%로 비교적 낮아 DDA협상이 국내 공산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
  -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공산품 시장은 1%의 가격차가 시장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위주로 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
  
- 집중적 관심의 대상인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이 충분히 된 분야와 개방이 필요하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은 분야, 개방에 민감한 분야에 따라 협상전략을 달리하고 있음
  - 서비스부문이 DDA의 주요 협상부문이 된 것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%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임
    - 서비스의 경우 전 세계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세계 수출의 19.4%, 수입의 19.3%임(WTO자료)
  -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부문(건설업 포함)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각 분야별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
    -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이 2000년 기준으로 각각 89.4%와 74.9%
    -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(국방·수입세 제외 기준)이 2001년 57.1%
  - DDA 서비스 협상의 경우 상대 무역국들과 시장개방요청서(request)를 주고받은 후 WTO에 시장개방계획서, 즉 양허안(offer)을 제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 중임
    - 2002년 6월 WTO 회원국들간 1차 시장개방요청서를 주고받은 상태이며, 우리나라는 36개국에 요청서를 제출한 반면 24개국으로부터 요청서를 접수함
    - 현재 각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서비스 협상 1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아래 [표]와 같이 1차 양허안을 확정

[표]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1차 양허 확정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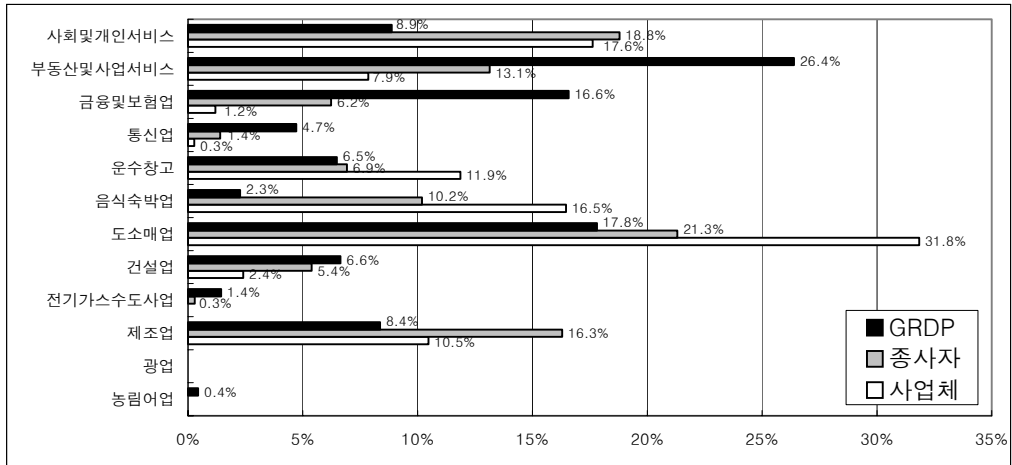
양허 구분	양허 분야	주요 양허 사항
최초 양허 분야	법 률	외국인변호사의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공법 자문서비스 허용
	교 육	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하여 양허
	국제배달	항공·선박·육송운송수단이 복합되는 부분의 국제배달 양허. 육상운송만으로 연결되는 배달과 편지분야 제외
	부동산	현재 외국인 차별 제한규정 없어 양허
	전문디자인	가구, 실내장식, 상품장식 및 미적 디자인 분야 양허
기양허한 사항의 개선·추가 분야	건 설	일부 제한분야 양허. 의무하도급제도는 현행 유지
	유 통	도소매 영업매장규모, 백화점 및 쇼핑센터 설립, 경제적 수요심사 등과 관련한 제한 폐지
	환 경	경제적 수용심사, 산업폐수처리서비스 공급자수 제한 폐지
	통 신	'97년 WTO 통신협상 후 자발적으로 취한 자유화 반영
	금 융	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가급적 폐지·완화
1차 양허안에 비포함 분야	출 판	신문·정기간행물 제외. 일반서적 출판서비스는 양허
	시청각	1차 양허안에서 제외한 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인 분야
	보건의료	
	우 편	

자료: 외교통상부, 「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 주요 내용」, 2003.3.21.

- 이외 현재 DDA협상에서는 반덤핑협정 개선, 환경, 지적재산권, 정부조달 제도 투명성, 새로운 통관절차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협상이 진행 중임
  - 반덤핑협정의 개선이나 환경부문 등에서는 우리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,
  - 협상에서 득실의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대상국들간 유연성(flexibility)을 강조하거나 강력한 주장을 자제

**DDA협상과 서울 산업경제,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쟁을**

- 서울 제조업의 경우 서울 전 산업에서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DDA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작을 것임
  - 제조업은 서울산업에서의 비중이 사업체 10.5%, 종사자 16.3%, GRDP 8.4%로 높지 않으며, 국내 공산품시장 또한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어 DDA협상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

자료: 「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」 및 통계청 GRDP 자료(2001년 기준)

주: GRDP(지역내 총생산)의 경우 서울 GRDP 중 산업분야의 값을 100%로 하여 계산한 비중임

[그림] 서울의 산업구조 및 산업별 비중

- 따라서 서울 제조업의 경우 전반적인 DDA협상보다는 최근 WTO에 가입한 중국 등의 영향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
- 이와 함께 서울기업의 상품·기술경쟁력을 증대하는 전략이나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혁신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서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
- DDA협상의 매우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부문의 경우, 서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협상결과에 따른 서울 산업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
  - 서비스업(건설업 포함)의 서울산업 대비 비중은 사업체 89.5%, 종사자 83.6%, GRDP 91.2%로 서비스부문의 절대적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
  - 그러나 1996년 OECD 가입이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국내 서비스시장이 많이 개방되었으므로 DDA협상으로 인한 서울 서비스산업에 대한 충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 - 물론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, 서울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됨

- 외국 서비스기업의 서울 진출은 서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촉매임
  - 서비스부문의 국제무역 방식은 국제전화 및 국제인터넷 정보제공 등과 같은 ‘국경간 공급’과 더불어 외국 기업이 상대국에 직접 진출하는 ‘상업적 주재’ 방식이 지배적임
  - 이 중 상업적 주재 방식은 일시적으로 서울 서비스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, 중·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촉진하고 서울의 서비스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
  - 즉, 고용창출, 숙련노동자의 서울 유입,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지원(도입) 및 새로운 자본재 도입, 선진 경영노하우 도입, 서울 기업들의 자체 연구개발 촉진과 같은 경쟁 유발 등 긍정적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임
- DDA협상을 서울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육성 기회로 삼아야
  - DDA협상에 따라 서울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개방 시기가 비교적 늦었던 금융·보험·사업서비스분야임
  - 특히 이들 분야가 서울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의 [그림]에서 볼 수 있듯이 무려 43.0%에 이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
  - 그러나 서울로서는 외국의 우수한 금융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들이 줄 수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, 타 산업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깊이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서비스를 육성해야만 서울이 목표로 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임
- 결론적으로, DDA협상에 따른 서울 산업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시장개방을 외면하려고 하기 보다는, 특히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는,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경쟁규범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들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경쟁해 나가야 함

김광선 · 서울시경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

kskim@sdi.re.kr